

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. 2. 25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5. 2. 15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2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 40회 사하구의회 (임시회)

제 1 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5. 2. 24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세무 2과장 이태경)

가. 제안이유

○ '94. 12. 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내용상 일치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

○ 구매,판매,보관,가공,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
○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제 17조, 제 24조, 제 31조에 명기된 건설기계 조항을 삭제하였고,

○ 개정지방세법에 제5장을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조세감면 조항을 일괄수룩함에 따라 구세조례중 제4조, 제17조, 제19조, 제29조, 제33조등에 분산수룩된 감면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지방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,

○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제266조 제3항에 「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에 100분의 50을 초과정수 할 수 있다.」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구세 조례상에는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확정된 것은 경감에 따른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